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322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3227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단1141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태형

변론 종결 2023. 11. 16.

판결 선고 2023. 12. 14.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단1141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3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5,574,8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5,574,8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의 가,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14행의 "감경되었다." 다음에 "그 후 소외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0. 11. 9. 681,473원을 변제하여 결국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잔액은 35,574,842원(= 36,256,315원 - 681,473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7행의 "을 받았다." 부분을 "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3. 30.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다304844 사건)이 선고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4, 1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11행의 "36,256,315원으로 볼 것이다." 부분을 "36,256,315원에서 변제된 681,473원을 공제한 35,574,842원으로 볼 것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16, 17행, 제9쪽 6행의 각 "36,256,315원" 부분을 모두 "35,574,842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 3항은 이 법원에서 한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되었다.1)

재판장판사조미옥

판사홍순욱

판사이영훈

별지

1)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 변제 관련 추가 주장 및 입증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변론 진행 경과(특히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소송복대리인만이 출석하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도 않았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의 여동생으로서 직접 소외 회사나 B로부터 변제 자료를 받아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이 판결 선고일 이틀 전에서야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점, 피고의 추가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해 심리할 경우 현저하게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법원이 변론재개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거나 변론재개

및 심리속행의 예외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